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70

발의연월일: 2021. 2. 17.

발 의 자:이종배·박대수·김선교

추경호 · 조수진 · 엄태영

주호영 · 곽상도 · 홍문표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, 문화재 보호구역,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따라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'경관지구'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'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'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)	제9조(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)
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	①
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	
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구역·지역 등에	
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	
(이하 "토지취득계약"이라 한	
다)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	
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	
받아야 한다. 다만, 제11조에	
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	
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	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제1호
	에 따른 경관지구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